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 1419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완화 및 서류제출을 간소화하여 입찰참여업체의 행정부담을 절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분야별책임기술인의 실적 만점기준 완화(별표1 1.분야별 평가기준)

- 젊은기술인 유입 촉진을 위해 분야별책임기술인의 실적 만점기준을 10건에서 7건으로 변경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제출 간소화(제5조제1항, 별표1 첨부1,2)

- 발주청은 평가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으로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평가서류의 표준양식을 신설

다.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정의 명확화(별표1 1.분야별 평가기준)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명확히 규정

라. 「건설기술 진흥법」 용어 개정사항 반영

- 용역, 용역업자 등을 건설엔지니어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으로 변경

3. 의견제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12. 4일까지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전화 044-201-3566, 3567)